

#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28
----------	-----

2018. 11. 23.  
도시계획관리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8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18년 10월 29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284회 정례회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(2018.11.23. 상정·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(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)

가. 제안이유

- 서울시는 국제적 도시건축 교류를 주도하여 글로벌 중심지로서 위상을 정립함과 동시에 도시와 건축을 매개로 세계 도시의 현안과 미래에 대해 시민과 다양한 관련 주체들이 참여하여 도시문제의 창조적 대안을 모색하는 ‘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’를 추진하고 있으며
-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디자인재단 내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사무국을 설치 운영할 예정임
- 이에,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성공적이고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서울비엔날레

출연 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

## 나. 주요내용

### 가) 출연개요

- 대상기관 : (재)서울디자인재단
- 관련법령
  - 법 령 :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  - 조 례 :
    -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
    -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### 나) 주요사업 (서울디자인재단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)

-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 운영
- 2019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최
-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다각적 홍보
- 안정적 재정기반 마련 방안 수립 및 운영

### 다) 출연의 필요성

- 서울디자인재단은 디자인 및 도시건축의 진흥·교류를 통해 시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서울의 디자인 등의 경쟁력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전담으로 하는 조직으로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따라 2017년도 제1회 행사를 성

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음

-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도시·건축·조경 등 여러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관련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사무국을 활용한 성공적 사업수행 및 서울디자인재단 조직의 장점을 활용한 안정적인 재정기반 마련을 위해 출연 필요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-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#### 나. 조 례

##### -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1조(서울비엔날레 개최 및 운영)①시장은 서울비엔날레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지정 설치하거나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설립된 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##### -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

제4조(재단의 사업)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6. 디자인의 국내·외 교류사업

#### 다. 기 타 :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정관

제4조(사업의 범위) 재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

6. 디자인의 국내·외 교류사업

8. 기타 출판업, 주차장운영업, 디자인상품 도·소매업 및 수출, 그 밖에 디자인 및 도시건축 진흥, 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(공예문화산업 지원사업,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) 등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라. 예산조치 : 2019년도 예산편성

마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#### 4. 검토보고 요지(조정래 수석전문위원)

- 이 동의안은 2019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서울디자인재단에 출연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여부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2018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2018년 10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-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(이하, 서울비엔날레)는 서울과 세계 도시 간의 도시·건축현안에 대한 국·내외적 교류와 함께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행사로 2년(홀수년) 단위로 개최되며, 2017년에 제1회 행사('17.9.2.~'17.11.5. 총65일)를 개최하였고 내년(2019)에 제2회 행사('19.9.~'19.11. 약 2개월)를 개최할 예정임(붙임1).
- 서울비엔날레는 도시공간개선단이 소관하나, 서울디자인재단 내에 행사 전담조직으로 서울비엔날레사무국을 설치·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파악되며, 제1회 행사도 서울디자인재단 내 서울비엔날레 사

무국('15.6.~'17.12.)이 수행한 바 있음(붙임2).

- 출연금은 사무국 설치·운영비용과 비엔날레 행사·사업비용으로 약 46억원(4,589,000천원)이 편성되어 있으며, 이는 '17년 출연금(55억원)과 비교시 약 9억원 감액된 규모이나(붙임3), '17년 출연금으로 편성되었던 운영비·홍보비 등 일부 비용이 '19년에는 도시공간개선단 자체 예산으로 편성된 결과로서, 제2회 서울비엔날레 전체 예산규모(54억원)는 제1회(56억원)와 비슷한 수준임.

〈서울비엔날레 관련 예산 편성 현황(자료: 도시공간개선단)〉

(단위 : 천원)

구분		합계	2015	2016	2017	2018	2019
서울 디자인 재단 출연금	소계	11,244,850	68,850	787,000	5,500,000	300,000	4,589,000
	도시공간개선단	10,457,850	68,850	-	5,500,000	300,000	4,589,000
	문화본부	787,000	-	787,000	-	-	-
출연금 외 관련 예산	소계	2,676,451	-	379,319	122,532	1,331,600	843,000
	도시공간개선단	2,553,919	-	379,319	-	1,331,600	843,000
	문화본부	-	-	-	-	-	-
	서울디자인재단 (수익금)	122,532	-	-	122,532	-	-
합계		13,921,292	68,850	1,166,319	5,622,532	1,631,600	5,432,000

## “행사 타당성”

- 제1회 서울비엔날레 수지분석 결과(붙임4), 총수입은 67억 8천8백만원이고 총지출은 66억 9천1백만원으로, 약 1억원(9천7백만원)의 직접 수익이 발생하였으나, 수입 대부분이 공공재원(서울시 예산)이고 행사 개최로 인한 수입(임장권·기념품 판매 등)은 1억 2천2백만원에 지나지 않음.

공적 행사에서 수익 창출은 어려울 수 밖에 없고 부가적 요소로 여겨질 수 있으나, 판매 증대, 민간후원금 확보 등을 통해 공공재원 의존도를 점차 낮출 필요는 있다고 판단됨.

- 서울비엔날레의 정량적 성과는 관람객 소비지출액을 산정한 직접경제 효과와 비용지불의사를 산정한 경제가치,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산정한 파급효과 등으로 평가되었으며, 직접경제효과 149억원, 경제가치 65억원, 파급효과 136억원 등 총 350억원으로 산출되어(붙임5), 행사의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,

〈제1회 서울비엔날레 정량적 성과 평가(자료: 도시공간개선단)〉

(단위 : 천원)

구 분	내 용	수 식	결 과	
직접경제효과	관람객이 방문함으로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추정	관람객 수 × 1인당 평균 소비지출액	14,913,496	
경제가치	행사에 대한 대가(입장료)로 얼마만큼의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지불의사를 바탕으로 행사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	행사 관람객 수 × 1인 평균 지불의사금액(WTP)	6,494,816	
파급효과	생 산 파급효과	추진 사업비 × 관광산업의 생산유발계수	9,089,300	13,671,350
	부가가치 파급효과	추진 사업비 × 관광산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	4,582,050	

서울의 주요 도시 장소와 건축 디자인 등을 주요 소재로 하여 도시·건축의 국제적 현안을 선도하는 역할을 정착화한다면 세계적인 행사로 자리매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특히, 세계 각지에서 서울의 청계천 복원과 대중교통시스템, 도시재생사업 등에 높은 정책적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바, 서울시의 도시·건축 국제행사 개최는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며 서울도시마케팅을 보다 선진화하는 의미도 높다고 판단됨.

- 다만, 서울비엔날레 외에도 서울건축문화제가 소관부서를 달리하여 개최되고 있는데(붙임6), 관련된 행사들을 서울비엔날레(프리비엔날레 포함)와 통합 개최하는 것이 행사의 재정적·행정적 효율성 및 시너지 효과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,

더 나아가 도시·건축 아카이브 구축 및 상설 전시, 도시·건축 아카데미, 서울의 관광·답사 가이드 등과 연계 운영하는 것이 서울비엔날레가 행사기간에만 집중되는 일회성을 넘어 사업의 연속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### “출연 타당성”

- 서울비엔날레는 행사의 전문성과 연속성(격년 개최) 그리고 행사의 세계적 비전 등을 고려할 때 전문적 전담조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서울디자인재단 내 서울비엔날레사무국을 설치하여 제1회 행사를 수행한 바 있고, 내년 제2회 행사도 동일 형태로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파악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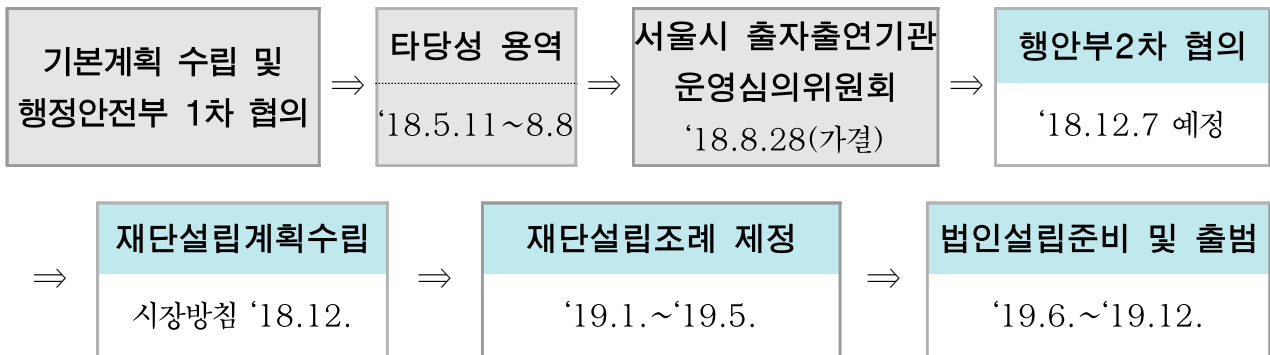
〈제2회 서울비엔날레 운영체계(자료: 도시공간개선단)〉

	도시공간개선단	문화본부	디자인재단	비엔날레 사무국	
역할/기능	서울비엔날레 관련 정책총괄, 예산확보	돈의문 박물관 마을 대관협조	DDP 대관 및 행정지원	서울비엔날레 기획 및 운영	
담당업무	기획업무, 총감독 운영, 운영위원회 운영, 홍보지원, 출연금 교부, 도시건축센터/도시건축박물관 관리	대관업무	대관업무 보수 지급 등	총감독 자문위원회 운영, 전시/홍보/행사 기획 및 운영, 수익사업 추진,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킹 기록물 관리	
관계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background-color: #8B4513; color: white; text-align: center;"> <b>서울시 (도시공간개선단)</b>            - 정책총괄, 행정지원 (팀장외 3명)         </div>		⇔ <b>공동주최</b>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background-color: #4F7942; color: white; text-align: center;"> <b>(재) 서울디자인재단 (비엔날레 운영조직 구성예정)</b>            - 서울비엔날레 기획 및 운영 (총 11명 범위내 구성예정 : 진행중)         </div>	

- 그러나, 제1회 서울비엔날레를 주관한 서울디자인재단의 경우, 사업범위를 패션·디자인으로 집중하고 있어 서울비엔날레 주관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재단 내 서울비엔날레사무국 운영도 현재 폐지('17.11.)된 상태로서<sup>1)</sup>,

도시공간개선단은 제2회 서울비엔날레까지만 서울디자인재단에 의뢰하고 이후에는 서울비엔날레 재단법인을 신설하여 행사를 운영코자 하고 있음.

〈'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재단'(가칭) 설립 추진(자료: 도시공간개선단)〉



- 서울비엔날레를 주관할 수 있는 재단법인(서울디자인재단)이 있음에도 별도의 재단법인을 신설하는 것은(붙임7), 조직의 외연적 팽창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여지나,

서울디자인재단의 적정 사업범위와, 서울비엔날레의 확장성, 도시공간개선단의 관련사업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임.

즉, 도시공간개선단이 소관하는 서울도시건축박물관(붙임8)과 서울비엔날레는 서울시의 주요 도시·건축 정책·사업의 국내외적 교류와 시민 공유의 공통된 취지가 있으므로,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박물관

1) '19년 초에 사무국 재구성 예정



과 비엔날레를 통합 운영한다면 박물관의 프로그램을 비엔날레에 활용하고 비엔날레의 콘텐츠와 행사 효과를 박물관 운영에 활용함으로써 서로의 연속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사료됨.

- 다만, 제2회 서울비엔날레 개최에 임박한 현재로서는 디자인재단 내 사무국을 설치하여 내년 행사를 준비·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사료되므로, 단기적으로 디자인재단으로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, 출연 규모는 '19년 예산안 심사시 그 적정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<sup>2)</sup>.
- 참고로,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 3년마다 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된<sup>3)</sup> 가운데, 서울시 투자심사('18.5.)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('18.11.) 각각 조건부 추진으로 심사결과가 보고되었음<sup>4)</sup>.

2) 이번 출연 동의 건은 시의회 예산심사에 앞서 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님. 출연금액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재정규모 및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시의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하게 됨.

3)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(행정자치부령 제74호, 2016.6.30.) 제4조제1항 제4조(투자심사의 절차 등)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, 당해 사업의 기본계획수립후 실시설계 용역전에 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히 국가시책 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고, **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.**

4)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('18.5.) : 조건부 추진

- 비엔날레의 브랜드 명성에 맞는 가시적 효과를 볼 수 있도록 '17년 도시건축비엔날레 성과 평가 지적사항 및 운영시 문제점(건축문화제 중복, 관람정보 제공, 전시물 사후활용 등)에 대한 대책 마련
- 민간 후원 유치 및 입장수입 등 자체 수입 증대방안 마련
- 향후 투자심사 의뢰시 재정사업 평가결과를 첨부할 것

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결과('18.11.) : 조건부 추진

- 국내·외 관람객 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관람객 유치 및 홍보 방안 마련
- 지속 가능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임대, 판매시설, 광고, 후원금 등 다양한 자체 세입 확보 방안 마련
- 개최 후 계량화가 가능한 성과자료를 바탕으로 사후보고서 제출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동의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#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22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8년 10월 17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는 국제적 도시건축 교류를 주도하여 글로벌 중심지로서 위상을 정립함과 동시에 도시와 건축을 매개로 세계 도시의 현안과 미래에 대해 시민과 다양한 관련 주체들이 참여하여 도시문제의 창조적 대안을 모색하는 ‘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’를 추진하고 있으며
- 나.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디자인재단 내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사무국을 설치 운영할 예정임
- 다. 이에,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성공적이고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서울비엔날레 출연 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출연 개요

- 대상기관 : (재)서울디자인재단
- 관련법령
  - 법령 :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  - 조례
    -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
    -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## 나. 주요 사업(서울디자인재단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)

-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 운영
- 2019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최
-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다각적 홍보
- 안정적 재정기반 마련 방안 수립 및 운영

## 다. 출연의 필요성

- 서울디자인재단은 디자인 및 도시건축의 진흥·교류를 통해 시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서울의 디자인 등의 경쟁력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전담으로 하는 조직으로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따라 2017년도 제1회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음
-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도시·건축·조경 등 여러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관련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사무국을 활용한 성공적 사업수행 및 서울디자인재단 조직의 장점을 활용한 안정적인 재정기반 마련을 위해 출연 필요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## 나. 조 례

### -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1조(서울비엔날레 개최 및 운영)①시장은 서울비엔날레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지정 설치하거나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설립된 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### -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

제4조(재단의 사업)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6. 디자인의 국내·외 교류사업

## 다. 기 타 :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정관

제4조(사업의 범위) 재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

6. 디자인의 국내·외 교류사업

8. 기타 출판업, 주차장운영업, 디자인상품 도·소매업 및 수출, 그 밖에 디자인 및 도시건축 진흥, 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(공예문화산업 지원사업,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) 등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## 라. 예산조치 : 2019년도 예산편성

## 마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건축교류팀 황재철 (☎2133-7622)